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 896호 2012. 8. 7(화)

◀ 입법예고 ▶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제2012-1294호) 2

◀ 고 시 ▶

○포항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제2012-71호) ... 15

○도로명주소 고시고시(제2012-72호) 29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제2012-72호) 32

◀ 공 고 ▶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제2012-1268호) 35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제2012-1278호)..... 36

○포항시 양식어업권 포기공고(제2012-1291호)..... 37

회 람									
--------	--	--	--	--	--	--	--	--	--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2-1294호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2012.7.11.)로 개정됨에 따라 시금고의 지정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 지역조합이 금고(기금, 특별회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금융기관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일부 불합리한 수의 방식의 금고지정 기준 삭제(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 나. 자치단체 출연 등 협력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명확화 (안 제17조)
 -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지 여부에 관계 없이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토록 기준을 명확히 함.

-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물품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처리
- 다. 지역조합에(제2금융권) 대한 평가기준 마련 (별표)
- 라.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 개선 (별표)
 - “관내지점의 수” 에서 금고 지정에 따라 필수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
- 마.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명확화

3.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4. 참고자료

- 행정자치부 예규 제415호(2012.7.11)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5. 개정 규칙안 : 붙임

6. 입법예고 : 2012년 8월7일 ~ 2012년 8월27일(20일간)

7. 의견제출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재정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제출처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재정관리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2501, 팩스 054)270-2490, 이메일(seachang@korea.kr)
- 라. 제출서식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8.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민간전문가” 를 “민간전문가(위원의 과반수 이상)” 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5조제3항에 따라” 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 ①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은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단, 비현금성 협력사업 제외)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반영 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물품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처리 한다.

별표와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평가 - 배점(10점)	10	
	· 국외평가기관	6	
	· 국내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0	
	· BIS 자기자본비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로 평가	7	
	· 고정이하 여신비율	7	
· 자기자본 이익율	6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4	
	가. 관내지점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7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9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라. 지역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3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1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라. OCR센터 운영계획	3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10	
	가. 지역사회 기여도	5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	5	

[별지 서식]

금융기관 심의표

포항시 금고 지정관련 ()의 제안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 원 (인)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기준	평가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평가 - 배점(10점)	10		
	· 국외평가기관	6		
	· 국내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0		
	· BIS 자기자본비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로 평가	7		
	· 고정이자 여신비율	7		
	· 자기자본 이익율	6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4		
	가. 관내지점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7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9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라. 지역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3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8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라. OCR센터 운영계획	3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		
	가. 지역사회 기여도	5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	5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 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 내에 있어야 한다.

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금고지정) ① (생 략)</p> <p>1. (생 략)</p> <p>2.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자치 단체의 금고 금융기관을 해당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p>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재 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 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p> <p>4.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 ④ (생 략)</p>	<p>제2조(금고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 <삭 제></p> <p> <삭 제></p> <p> <삭 제></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3조(금고지정기준)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제3조(금고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 ----- -----</p>

현 행	개 정
<p>제6조(구성) ① (생 략)</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u>민간전문가</u>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③ (생 략)</p> <p>제12조(금고지정 절차) ① ~ ④ (생 략)</p> <p>⑤ 시장은 <u>제5조 제3항의 규정</u>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제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민간전문가(위원의 과반수 이상)</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금고지정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u>제5조제3항에 따라</u> ----- ----- -----</p> <p>제17조(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p> <p>①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업은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단, 비현금성 협력사업을 제외)하여 집행하여야 한다.</p> <p>②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사업(물품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처리한다.</p>

현행			개정			
[별표] 【포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포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배점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비고	
계		100	계		100	
		30			3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신설>	10	가. (현행과 같음)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평가 - 배점(10점)	10		
	· 국외평가기관	6	· (현행과 같음)	6		
	· 국내평가기관	4	· (현행과 같음)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신설>	20	나. (현행과 같음)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20		
	<신설>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 BIS 자기자본비율 <신설>		· (현행과 같음)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로 평가		7	
	· 무수익 여신비율		· 고정이하 여신비율		7	
	· 자기자본 이익율		· (현행과 같음)		6	
			18			18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가. (현행과 같음)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나. (현행과 같음)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다. (현행과 같음)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라. (현행과 같음)	3		
		24			24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 현황 및 지역 주민 이용 편리성 <신설>	7	가. 관내지점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7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9	나. (현행과 같음)	9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5	다. (현행과 같음)	5		
	라. 지역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3	라. (현행과 같음)	3		
		18			18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가. (현행과 같음)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	나. (현행과 같음)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	다. (현행과 같음)	5		
	라. OCR센터 운영계획	3	라. (현행과 같음)	3		
		10			10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5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	5		

현 행	개 정
<p>[별지 서식] 【 금융 기관 심 의 표 】 포항시 금고 지정관련 ()의 제안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인)</p>	<p>[별지 서식] 【 금융 기관 심 의 표 】 포항시 금고 지정관련 ()의 제안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인)</p>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계	계
배점	배점
비고	비고
100	100
30	30
1. 금융 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1. 금융 기관 대내신 및 조영도의 의용재무 구조안정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신 설>	가. (현행과 같음)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평가 - 배점(10점)
10	10
· 국외평가기관	· (현행과 같음)
6	6
· 국내평가기관	· (현행과 같음)
4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신 설>	나. (현행과 같음)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0	20
· BIS 자기자본비율 <신 설>	· (현행과 같음)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로 평가
7	7
· 무수익 여신비율	· 고정이하 여신비율
7	7
· 자기자본 이익율	· (현행과 같음)
6	6
18	18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예금 금리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예금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가. (현행과 같음)
6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나. (현행과 같음)
5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다. (현행과 같음)
4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라. (현행과 같음)
3	3
24	24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 현황 및 지역 주민 이용 편리성 <신 설>	가. 관내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7	7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나. (현행과 같음)
9	9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다. (현행과 같음)
5	5
라. 지역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라. (현행과 같음)
3	3
18	18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가. (현행과 같음)
5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나. (현행과 같음)
5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	다. (현행과 같음)
5	5
라. OCR센터 운영계획	라. (현행과 같음)
3	3
10	10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5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
5	5

<신 설>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 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 내에 있어야 한다.

관 련 법 령

○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3.26)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 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2-71호

포항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포항 흥해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 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일

포 항 시 장 박 승 호

1. 사업의 명칭

- 포항 흥해 남옥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택지의 안정적 공급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일원
- 면 적 : 175,931m²

4. 사업시행자 : 남옥지구 도시개발조합장

5. 시 행 기 간 : 2012. 8. 1 ~ 2017. 8. 1

6. 시 행 방 법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 : 붙임

8.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인가로부터 20일간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054-270-3473)

9.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및 공고사항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수도법 제17조,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도면 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 054-270-3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포항 흥해 남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항시 흥해읍 옥성리 281-1번지 일 일	175,931	-	175,931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 (S=1/1,200) : 거재생략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구분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75,931	-	175,931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3,426	-	123,426	
	제3종일반주거지역	51,460	-	51,460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045	-	1,045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①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30	4,712.5	46,380	7	1,606	19,586	14	2,863.5	25,512	9	243	1,282
대로	1	463	4,715	1	463	4,715						
중로	4	716.5	10,879	1	225	4,586	2	454.5	5,834	1	37	459
소로	25	3,533	30,786	5	918	10,285	12	2,409	19,678	8	206	823

② 도로 결정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계	대로	1	1개소 노선									
기정	대로	1	1	35 ~ 38	간선 도로	3,600 (463)	남부구역계	북부구역계	일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소계	중로	1	1개소 노선									
기정	중로	1	남1	20	집산 도로	225	중로 2-73 옥성리 572	중로 2-남1 남성리 563-1	일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소계	중로	2	2개소 노선									
기정	중로	2	73	15 ~ 20	보조 간선	1,150 (153.5)	대로 1-1 옥성리 364	중로 2-71	일반 도로	-	포항시고시 제2010-30 (2010.4.5)	
기정	중로	2	남1	15.5 ~ 19	집산 도로	301	대로 1-1 옥성리 281-21	중로 1-남1 남성리 563-1	일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소계	중로	3	1개소 노선									
기정	중로	3	남1	12	국지 도로	37	중로 1-남1 남성리 569	소로 1-남3 남성리 567	일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계	소로	1	5개소 노선									
기정	소로	1	남1	11	국지 도로	145	소로 1-남3 남성리 567	소로 2-남1 옥성리 242-7	일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기정	소로	1	남2	11	국지 도로	119	중로 2-남1 옥성리 281-16	소로 1-남1 옥성리 264	일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기정	소로	1	남3	11	국지 도로	203	중로 2-남1 남성리 563-1	소로 2-남1 옥성리 199	일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기정	소로	1	남4	10	국지 도로	167	중로 2-남1 옥성리 281-1	소로 2-남4 남성리 560-1	일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기정	소로	1	남5	10	국지 도로	284	중로 1-남1 남성리 563-1	소로 2-남7 남성리 433-2	일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소계	소로	2	12개소 노선									
기정	소로	2	남1	8	국지 도로	544	소로 1-남3 옥성리 199	소로 1-남3 남성리 565	일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기정	소로	2	남2	8	국지 도로	112	소로 1-남3 남성리 576-3	소로 2-남1 옥성리 238-6	일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기정	소로	2	남3	8	국지 도로	177	소로 1-남3 남성리 566-1	소로 2-남1 옥성리 262	일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기정	소로	2	남4	8	국지 도로	242	소로 1-남4 옥성리 281-1	소로 1-남4 남성리 561-1	일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기정	소로	2	남5	8	국지 도로	107	소로 2-남4 옥성리281- 17	소로 2-남4 옥성리 286-3	일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기정	소로	2	남6	8	국지 도로	143	중로 1-남1 남성리347- 10	소로 1-남5 남성리 347-12	일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기정	소로	2	남7	8	국지 도로	456	소로 1-남5 남성리347- 12	소로 2-남10 남성리 431-1	일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기정	소로	2	남8	8	국지 도로	160	소로 1-남5 남성리347- 12	소로 2-남7 남성리 434-2	일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기정	소로	2	남9	8	국지 도로	36	소로 2-남7 남성리 445-1	소로 2-남8 남성리 444	일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남10	8	국지 도로	236	소로 1-남5 남성리 350	소로 2-남7 남성리 431-1	일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기정	소로	2	남11	9	국지 도로	156	소로 1-남5 남성리 433-1	소로 2-남7 남성리 431-1	일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기정	소로	2	남12	8	국지 도로	40	소로 2-남10 남성리 353	소로 2-남11 남성리 431-2	일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소계	소로	3	8개소 노선									
기정	소로	3	보1	4	보행자 도로	20	중로 2-73 옥성리 197	소로 1-남3 옥성리 199	특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기정	소로	3	보2	4	보행자 도로	9	대로 1-1 옥성리242- 15	소로 2-남1 옥성리242-1 5	특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기정	소로	3	보3	4	보행자 도로	43	중로 2-남1 옥성리281- 14	소로 2-남1 옥성리 281-11	특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기정	소로	3	보4	4	보행자 도로	34	중로 2-남1 옥성리281- 14	소로 2-남4 옥성리281-1 7	특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기정	소로	3	보5	4	보행자 도로	42	소로 2-남8 남성리 444	소로 1-남5 남성리 433-2	특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기정	소로	3	보6	4	보행자 도로	31	소로 2-남6 남성리347- 6	학교구역계 남성리 346	특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기정	소로	3	보7	4	보행자 도로	17	중로 1-남1 남성리 568	학교구역계 남성리347-2 5	특수 도로	-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기정	소로	3	보8	4	보행자 도로	10	대로 1-1 옥성리242- 1	소로 2-남1 옥성리238-6	특수 도로	-	포항시고시 제2010-30 (2010.4.5)	

(2)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개소		1,060	-	1,060		
기정	남1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남성리 567번지일원	1,060	-	1,060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개소			5,672	-	5,672		
기정	1	남옥1공원	어린이 공원	남성리 566번지일원	1,500	-	1,500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기정	2	남옥2공원	어린이 공원	옥성리 281-1번지일원	1,500	-	1,500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기정	3	남옥3공원	어린이 공원	남성리 349-1번지일원	2,672	-	2,672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2)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3,393	-	3,393		
기정	51	녹 지	완충녹지	대로 1-1호선변	3,393	-	3,393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개소			17,556	-	17,556		
기정	57	학 교	초등 학교	남성리 347-8번지 일원	17,556	-	17,556	경북고시 제2007-237 (2007.5.10)	지구내 (3,571㎡) 지구외 (13,985㎡)

(2) 방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개소			1,200	-	1,200		
기정	1	유수지	저류지	남성리 436-1번지 일원	1,200	-	1,200	포항시고시 제2010-30 (2010.4.5)	공동주택 (중복결정)

3) 기반시설의 설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S=1/1,200)

:거제 생략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가구번호	면적(㎡)	획 지 계 획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68,056			
A - 1	1,450	본 사업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계획인가 후 이를 획지계획으로 대체하고자 함.		
A - 2	3,280		“	
A - 3	3,386		“	
A - 4	2,270		“	
A - 5	1,385		“	
A - 6	3,562		“	
A - 7	2,550		“	
A - 8	5,273		“	
A - 9	3,140		“	
A - 10	3,330		“	
A - 11	4,026		“	
A - 12	2,084		“	
A - 13	2,835		“	
A - 14	2,148		“	
A - 15	1,590		“	
A - 16	1,177		“	
A - 17	3,300		“	
A - 18	2,890		“	
A - 19	2,490		“	
A - 20	3,093		“	
A - 21	4,332		“	
A - 22	3,527		“	
A - 23	4,938		“	

나.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가구번호	면적(㎡)	획 지 계 획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47,799			
B - 1	47,799	본 사업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 계획인가 후 이를 획지계획으로 대체 하고자 함		

다. 학교용지

가구번호	면적(㎡)	획 지 계 획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3,571			
C - 1	3,571	남성리 345번지 일원	3,571	초등학교

라. 주차장용지

가구번호	면적(㎡)	획 지 계 획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1,060			
D - 1	1,060	남성리 567번지 일원	1,060	주차장

마. 공원용지

가구번호	면적(㎡)	획 지 계 획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5,672			
E - 1	1,500	남성리 566번지 일원	1,500	어린이공원①
E - 2	1,500	옥성리 231-17번지 일원	1,500	어린이공원②
E - 3	2,672	남성리 350번지 일원	2,672	어린이공원③

바. 녹지용지

가구번호	면적(㎡)	획지계획		비고
		위치	면적(㎡)	
합계	3,393			
F - 1	750	옥성리 281-23번지 일원	750	완충녹지㉔
F - 2	1,176	옥성리 281- 8번지 일원	1,176	
F - 3	480	옥성리 242- 6번지 일원	480	
F - 4	987	옥성리 238-10번지 일원	987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호	위치(획지)	구분	계획내용	
A	A-1~2 3	용도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교정 및 군사시설, 공장, 발전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층수	최고층수	• 3층 ~ 4층 이하
			최저층수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단,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에 의한 건축계획 처리 기준

- 남미질부성 경계로부터 ~ 53m까지 : 모든 시설행위 제한
- 53m~100m까지 : 3층 이하 12m이내(지하층 제외)
- 100m~200m까지 : 최고층수 22층이내
- 기타지역 : 적정 층수 규모

나.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 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B	B-1	용도	권장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도시 계획조례」에 의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불 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도시 계획조례」에 의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정 및 군사시설, 공장, 발전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층수	최고수	• 22층 ~ 25층 이하
			최저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단,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에 의한 건축계획 처리 기준

- 남미질부성 경계로부터 ~ 53m까지 : 모든 시설행위 제한
- 53m~100m까지 : 3층 이하 12m이내(지하층 제외)
- 100m~200m까지 : 최고층수 22층이내
- 기타지역 : 적정 층수 규모

다. 학교용지

도면 번호	위 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C	C-1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시설
			불 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층수	최고 층수	• 3층 ~ 4층 이하
			최저 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라.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D	D-1	용도	허용 용도	• 주차장 • 「주차장법」 및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는 건축물
			불 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주차장법」 및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용적률	
		층수	최고 층수	• 4층 이하
			최저 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마. 공원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	E-1~3	용도	허용 용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용도	
			불 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층수	최고 층수
		최저 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S=1/1,200)
: 계제 생략

3.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1)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가.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진출입이 불가하며, 이외의 지역에서 차량 진출입 가능	세부사항 도면 참조

나. 보행동선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보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동선과 녹지공간의 유지적인 연결체계를 확보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 •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보행동선 상에 주민 공동 시설과 어린이놀이터 등을 연계하여 계획 	

포항시 고시 제2012-7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포항시장 박승호

○ 도로명주소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길 35 외 5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92~349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 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57-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35	20091201	행정구역명(병포리)을 이용하여 병포리로 명명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35-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92	20091201	행정구역명(병포리)을 이용하여 병포리로 명명	
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동동 38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회양대로 790	20091201	"광과 회양의 도시 글로벌 포항" 미래의 대도시 포항발전의 희망을 담은 도로명	
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동동 53-4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해로91번길 15-1	20091201	대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공수리 16-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흥계길 36-1	20091201	행정구역명(흥계리)을 이용하여 흥계길로 명명	
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3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운재로 374	20091201	운재산을 향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한 도로명	
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재내리 97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송로 12	20091201	대송과 흥강공단 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장동 905-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3	20090710	환경해 물류 중심도시 포항이 동해로 직차게 뻗어가는 새천년의 희망을 담은 도로명	
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장동 924-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450번길 59	20091201	새천년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장동 98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5번길 7	20091201	대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장동 984-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5번길 5	20091201	대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동 33-8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흥로140번길 25-2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동 584-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흥로61번길 12-11	20091201	중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238-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159번길 33-8	20091201	연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590-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길 23-7	20120731	행정구역명(유강리)을 이용하여 유강길로 명명	
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590-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길17번길 6	20091201	유강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단리 40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원서길209번길 22	20091201	원서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89-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340번길 35-1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89-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340번길 35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16-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천로298번길 48	20091201	남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사리 67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서길98번길 18-1	20091201	신서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6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로 147	20091201	장기면과 오천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57-27, 1157-32, 1157-2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변로 15	20091201	포항시와 상성을 위해 해병대 1사단의 포항주둔 50주년을 기념으로 해변로로 명명된 도로명
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75-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용주로879번길 25	20091201	장용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7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8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용주로 825	20091201	오천에서 출생하신 포은 정몽주 선생의 인명을 이용한 도로명
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리 27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호미로1857번길 20	20091201	호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5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지동 589-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성로 97	20091201	에로부터 호지가 많은 지역으로 호자들의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2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지동 598-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성로52번길 5-1	20091201	호성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계전리 16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계전길 107-1	20091201	행정구역명(계전리)을 이용하여 계전길로 명명
3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927-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협동길 45-1	20091201	세마을운동 발상지의 상징인 기계면의 기본정신을 이용한 도로명
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927-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협동길 45	20091201	세마을운동 발상지의 상징인 기계면의 기본정신을 이용한 도로명
3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대리 25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대길 142-18	20091201	행정구역명(화대리)을 이용하여 화대길로 명명
3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56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상기2길 14-4	20091201	중앙상기의 시작지점에서부터 2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3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민2기 136-3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298번길 25	20091201	중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광천리 792-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196번길 12	20091201	보경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4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신흥로 86-36	20091201	신광과 흥해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 앞글자를 따서 신흥로로 명명
3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곡리 6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곡길116번길 10	20091201	흥곡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흥동 693-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상기6길 3	20091201	중앙상기의 시작지점에서부터 6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3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158번길 15	20091201	장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2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158번길 29-7	20091201	장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56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전마로46번길 16-29	20091201	전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16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174번길 29-10	20091201	장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211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30번길 52-9	20091201	양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212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로30번길 56	20091201	양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21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47	20091201	행정구역 명칭(양덕동)과 방위(남)를 이용하여 양덕남로 명명
4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782-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정량주택로4번길 16	20110630	정량주택로의 시작점에서부터 약 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91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상흥로 395	20091201	포항의 3대 호수가 있었던 지역의 상호와 흥해를 연결하는 도로로 옛지명과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4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916-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상흥로 386	20091201	포항의 3대 호수가 있었던 지역의 상호와 흥해를 연결하는 도로로 옛지명과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4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114-3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당로 61-16	20091201	옛 지명(용당)을 이용하여 용당로 명명
5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32-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정량로18번길 13	20091201	정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72-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11번길 25-5	20091201	법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39-1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로20번길 11-1	20091201	죽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두마리 309-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면봉산길705번길 21	20091201	면봉산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상리 1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를 한동로 78-4	20091201	흥해에서 한동대를 지나 한반도의 동쪽 동해를 향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과 방위를 이용한 도로명
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64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를 상흥로502번길 41	20091201	상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64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를 상흥로502번길 35	20091201	상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천리 328-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를 한동로 199-93	20091201	흥해에서 한동대를 지나 한반도의 동쪽 동해를 향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과 방위를 이용한 도로명

포항시 고시 제2012-72 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포항시장 박승호

○ 도로명주소 : 포항시 북구 두호로37번길 5-9(두호동) 외 1건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92~3495)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 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NO	종전 지번주소	변경후 지번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1	포항시 남구 대도동 6-1	포항시 남구 대도동 6-1, 6-7	포항시 남구 중앙로121번길 46 (대도동,원대맨션)	좌동	2012.07.23	관련지번변경
2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52-13	좌동	포항시 북구 학전로 77-6 (두호동)	포항시 북구 두호로37번길 5-9(두호동)	2012.07.27	건물번호변경
3						
4						
5						
6						
7						
8						
9						
10						

공 고

포항시공고 제2012-1268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0일

포 항 시 장 박 승 호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 (폐지·변경) 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신광면	리도	기일선	신광 213	신광면 만석리 800-88	신광면 기일리 278-4	4.2km		7~9m	6~8m	농어촌도로 확포장

- 주 : 1. 도로의 종류란에는 면도, 리도, 농도를 기입
 2.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
 3. 노선지정도는 축적 1/500 내지 1/1,200의 지형이 포함된 지적도에 작성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로과(☎054-270-3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포항시 공고 제2012-1278호

포항 도시계획시설(대로2류36호선)사업에 대하여 공사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12 . 8. .

포항시장 박승호

- 1. 사업시행지 : 포항시 북구 죽천리~용한리 일원
- 2. 준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 칭 : 대로2류36호선 (영일만2 산업단지 진입도로)
- 3. 사업의 규모 : L=1.9km, B=30m
- 4. 사업시행자 : 포항시장
- 5. 사업 시행기간 : 2009. 1. 12 ~ 2012. 6. 14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산업단지지원과(270-38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공고 제2012-1291호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권 포기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포항시장 박승호

○ 공고사항

면허번호		포항시 양식어업면허 제130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복합양식어업(수하연승식)
어업권자	주소	경북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363
	성명	전보권
	주민등록번호	710614-1*****
어업면허기간		2007. 7. 5. ~ 2017. 7. 4.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지선
처분 내역		어업권 포기 (3ha)
처분 년 월 일		2012. 8. 3.